

한국식품연구원 기본/자체사업 공동·위탁과제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

2026. 1.

-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(거래명세서, 계좌이체증명 등) 구비
-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의 사용이 원칙이며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 다만,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,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 사용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‘계좌이체’ 로 인정할 수 있음
- 본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한국식품연구원 기본사업 예산 배정 및 편성기준’,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(하위 관련 법령 및 지침 포함)’ 순으로 준용
- 세목, 세세목간 예산변경 시, 기관 내부결재를 득한 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변경
-(변경시) Ezbaro시스템→협약→연구계획변경→수정예산정보 변경→저장
-(정산시) 당해 예산변경 관련 기관내부결재서류 취합 제출
- 당해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 등록 완료, 통합이지바로에 집행내역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, 연구개발비 전액 불인정 될 수 있음
- 식품연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과제의 연구시작일~실제 협약체결일 사이에 집행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 사용 및 정산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한 금액은 정상집행금액으로 인정함

비목	세목	세세목	사용 및 정산기준	비고
직접비	인건비	내·외부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서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제금액을 계상 ○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%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계상률(참여율) 30%이내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○ 타기관 소속의 연구원 참여시 해당기관 참여 동의 문서 제출 	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의 경우 변경 불가 참여연구원 신규투입시 보안서약서 필수 제출 ※ 집행잔액 단계이월 불가
		연구지원인력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, 전문연구소(센터)등에서 활용하는 인건비 ○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만 집행 가능하고, 연구수당 계상·집행 불가 	
		학생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기관이 대학인 경우,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석·박·학사과정 학생의 보수는 학사이하(130만원), 석사과정(220만원), 박사과정(300만원) 이상 기관 자율 설정 ○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보장, 처우개선,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	
	[불인정]		1)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2)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3)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% 받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	
	연구시설·장비비		○ 계상불가	
연구재료비	연구재료 구입비		○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	
	연구개발과제 관리비		○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	
	연구재료 제작비		○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(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) 비용	
[불인정]		1) 과제 최종(단계)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집행하여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2)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·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		
	지식재산 창출 활동비		○ 기술·특허·표준 정보 조사·분석, 원천·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	

비 목	세 목	세 세 목	사 용 및 정 산 기 준	비 고
연구 활동비		외부 전문기술 활용비	○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,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,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(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)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(원고료, 강사료, 자문료 등 포함)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	직접비 40%이내 계상
		[예외]	○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사용가능	
		[불인정]	○ 전문가활용(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,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,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) ○ 원내 동일부서(단/센터/실/팀)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	
		회의비	○ 집행시 사전 내부결재문 또는 회의록 구비 ○ 회의비 집행 시 외부인 1인 이상 포함 및 사전 내부결재 승인	참석자 1인당 50,000원 범위 내 집행
		회의·세미나 개최비	○ 회의장 임차료(부스 설치비 등 시설물 사용료), 숙기료, 통역료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·세미나 개최비	
		국내출장비	○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 비용 ○ 출장 중 회의비 사용 시 출장여비(식대)와 중복집행 불가(1식 제외) ○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실소요 금액 계상	
		국외출장비	○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국외 출장 비용 ○ 국외출장 신청 전 기관자체 심의위(ex.국외출장심의위원회)를 운영하여 사전심의로 승인된 출장 건에 대해서만 집행 인정 ○ 국외출장여비 집행 시, 아래 2개 중 1개 이상의 증빙 구비 ① 국외출장 적절성 여부 입증자료(부실학회 출장예방을 위한 국외출장심의위 운영자료 등) ② 국외출장심의위에 준하는 기관 자체 심의위 등 객관적 증빙자료(회의록, 의결서) 등 ○ 국외여비는 당해과제 수행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, 작성시 출장자, 목적, 방문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 ○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○ 총 출장일수는 15일 이내	
		[불인정]	1)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) 차량임차비 등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3)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,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) 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중 회의비(식대)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5) 숙박비,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) 출장결과보고서(출장자, 기간, 방문기관, 목적, 일정 등 명시) 없는 국외여비 7) 부실학회 참석 8) 외부인 미포함 및 사전내부결재 없이 집행한 회의비 9) 주류 등 유흥성 경비	

비목	세목	세세목	사용 및 정산기준	비고
		소프트웨어 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 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·네트워크의 이용료 ○ 구독형태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포함 ○ 네트워크 이용료 포함 ○ 과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소프트웨어 활용 계약체결 불가 (단계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과제 종료일은 단계 종료일로 봄) 	연구실 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/설치/ 임차/사용대차 등 제외
		연구실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 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, 사무용품비,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○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(검수 등 행정 절차의 완료)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(컴퓨터, 프린 터,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) 	※영리기관의 경우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연구실운영비 사용가능
		연구인력지원비 (교육훈련 및 학회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·훈련 비용, 학회·세미나 참가비 	
		연구인력 지원비 (야근 및 특근식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(특근) 식대 ○ 야근(특근) 식대관련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, 1인 1만원 이하 집행 가능 ○ 평일 점심식대 사용 불가 	
[불인정]		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(중신 학회비,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 거나 최종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참가비 등) 2)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3) 에어팟, 버즈 등 고가의 무선이어폰·헤드폰 및 웨어러블 기기(워치 등) 구입 불가 개인 난방기구, 방석, 등받이, 손목보호대, 발받침 등의 개인필요에 의한 물품 구입 불가 				
		그 밖의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·복사·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, 각종 세금(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함) 및 공과 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,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 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	
[불인정]		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휴대폰요금, 연료비, 청소비, 명함, 생수, 도장, 열쇠, 신문구독 등 2)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3) 해당과제와 무관한 기관운영비성 경비, 찬조금, 화환구입비 등 4) 환급 가능한 관세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(환급여부 불문) 				
		연구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·장려금 ○ 인건비가 지급된 모든 참여연구원에 지급 ○ 인건비 집행액 비율로 연동하여 예산 감액 ○ 인건비의 16% 이내로 계상 	증액불가 ※집행잔액 단계이월 불가
연구수당	[불인정]			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해당과제 미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 2)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 3)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단독으로 지급 (참여연구원 1인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% 초과 지급 불가) 			

비목	세목	세세목	사용 및 정산기준	비고										
		4) 인건비를 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연구수당 5) 연구(근접)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6)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16%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												
	위탁연구개발비		○ 계상불가											
간접비	인력지원비		○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등 ○ 간접비 계상기준: 직접비(미지급인건비, 현물, 위탁제외) × 고시비율 ○ 직접비 50%이하 집행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할 경우 불인정	증액불가 ※ 집행잔액 단계이월 불가										
	연구지원비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관구분</th> <th>계상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 등 비영리기관 (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관)</td> <td>직접비 × 고시비율 이내</td> </tr> <tr> <td>②대학, 비영리기관 (의무 산출기관이 미산출한 경우)</td> <td>직접비 × 5%이내</td> </tr> <tr> <td>①,②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관</td> <td>직접비 × 17%이내</td> </tr> <tr> <td>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*</td> <td>직접비 × 10%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기관구분	계상 기준	①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 등 비영리기관 (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관)	직접비 × 고시비율 이내	②대학, 비영리기관 (의무 산출기관이 미산출한 경우)	직접비 × 5%이내	①,②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관	직접비 × 17%이내	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*	직접비 × 10%이내
	기관구분	계상 기준												
	①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 등 비영리기관 (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관)	직접비 × 고시비율 이내												
②대학, 비영리기관 (의무 산출기관이 미산출한 경우)	직접비 × 5%이내													
①,②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관	직접비 × 17%이내													
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*	직접비 × 10%이내													
성과활용지원비														
			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기업 포함											

※ 위의 내용 중 상세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며, 연구개발계획서에 부적정하게 계상된 금액이 정산 시 발견된 경우 해당 집행 금액은 불인정 될 수 있음.